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 [1]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 의 규정 취지
- [3]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재판경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5고정690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1984,520)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1988,189)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1992,1037)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1988, 168)
- [2]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공1993하, 2098)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공2000하, 1547)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따름판례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법령

-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16조](#)
- [3] [형법 제16조](#) , [제20조](#) , [제24조](#) , [제314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피해자의 승낙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갱신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혹은 명도의무를 지체’하였을 뿐 차임, 관리비의 연체 등과 같은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2003. 12.경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무죄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법률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참조),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단전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무죄라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